

중수부폐지와 독립성 보장된 사정기구 신설이 해답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혁위) 6인 소위원회는 지난 달 1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10여 가지가 넘는 합의안 중에서 주목을 받거나 반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안은 대법관 6명 증원, 대검중수부 폐지와 특별 수사청 신설, 전관변호사 수임제한 등이다. 지금까지 사법개혁은 개혁의 대상들이 중심이 되어 논의하고 추진되었던데 반해 선출된 권력인 국가가 주도한 사법개혁 논의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만큼 관심과 반향이 매우 컸다. 대한변협은 대체적으로 환영했고 검찰처럼 거세게 반발하는 기관도 있었으며 매우 실망스럽다는 시민단체의 성명도 있었다. 법원은 검찰의 반발처럼 언론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범원장회의를 통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상고심제도의 개선안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합의안은 내용적으로 전관예우 방지대책이나 대검중수부 폐지에 방점을 둔다면 예상을 뛰어넘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유사한 ‘특별수사청’을 대검찰청에 두면서 그 수사대상에서 자신들을 제외시키고 길들이고 싶은 판사와 검사로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그러니 검찰 총장으로부터 ‘중수부를 해체하면 이득을 볼 사람’이라는 비난을 들은 것이다. 좌고우면한 흔적이 보인다. 그것이 좌우 균형을 잡기 위한 것이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좌우를 살폈다는 얘기는 눈치를 봤다는 의미다. 범 조인 출신, 그것도 검사출신 국회의원이 검찰개혁을 다루었으니 ‘무늬만 개혁’ 안이 나온 것이다.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별도의 수사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에는 철저히 한 목소리를 냈다.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야합을 한 것이다.

하 태 훈

-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 대법원 양형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비대해진 검찰권한을 조정하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수부가 폐지되어야 한다. 대검의 직접수사기능을 폐지하여야 한다. 일선 지검에 특수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검에 수사 부서를 존치하는 것은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대검의 기능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검찰총장의 직할부대인 중수부의 성격상 검찰총장이나 정치권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중수부 폐지가 논의되었던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때마다 검찰의 반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을 바탕으로 검찰 스스로가 ‘중수부 수사기능 축소와 각 지검의 권한을 강화’ 하는 조직개편안 시안을 만들기도 했으나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가 논의되면서 중수부 폐지가 거론된 바 있다. 여러 차례의 범조비리사건 처리에서 보듯이 판·검사의 비리는 기소는 커녕 수사대상조차 되지도 않는다. 설사 수사를 착수하더라도 기소되기 어렵고 기소가 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기는 더욱 어렵고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지도 않는다. 특히 검찰이 스스로의 비리에 대한 통제에 무능하고 의지도 없었음은 경험적 사실이다. 과잉수사(過剩搜查)도 그렇지만 과소수사(寡少搜查)나 편파수사·기소도 문제다. 검사·판사 및 공직자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별도의 수사 기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국회는 권력형 비리 수사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을 차단해야 한다.

검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견제하면서도 권력형 비리 수사 전반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그 해답이다. ‘부정부패의 만연’을 걱정하는 검찰이 더 이상 공수처 설치에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고, 국회 또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를 수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권력형 비리가 만연할 것’이라는 검찰의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특별수사청을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하면 또 다시 독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등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정치적 독립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6인 소위의 합의사항과 배치된다.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독점적 기소권, 기소재량권, 형집행권 등을 손에 쥐고 사법처리의 대상과 범위, 기소 여부 등을 독자적·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그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공수처와 같은 상시적인 감시·통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에 대한 수사과 기소에서 끊임없이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부담을 공수처를 신설하여 덜어주어야 한다. 수사 권력의 분산을 통하여 수사 권력의 정치적 중립을 꾀하여야 한다. 판·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특별사정기구인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기소로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한다면 사법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게 될 것이다.